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미래융합컨설팅학과

미래융합공공컨설팅전공

황 차 호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하충열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시를 중심으로-



2018년 12월 일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건설팅대학원

미 래 융 합 컨 설 텅 학 과

미 래 융 합 공 공 컨 설 텅 전 공

황 차 호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하충열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in
management grant-in-aids by local government

위 논문을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미래융합컨설팅학과

미래융합공공컨설팅전공

황 차 호

황차호의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 문 초 록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미 래 융 합 컨 설 팅 학 과

미 래 융 합 공 공 컨 설 팅 전 공

황 차 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에 의한 지방재정의 운용상 한계로 인하여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의 하나인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정책 내지는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위탁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비 전부 혹은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과는 달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대응 지방비를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경직성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추진할 수 없는 도로나 항만건설 등 기간산업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적 측면

에서 꼭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한 사실이나, 운용상에 있어서 역기능적 측면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상당수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문제점에 관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한 결과, ①기준보조율을 미준수하고 있고, ②대응 지방비 부담을 과중시키며, ③차등보조율 적용상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④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으며, ⑤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⑥정치적 성격을 띤 국고보조금이 제공되기도 하며, ⑦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선정 및 교부결정시기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⑧국고보조금에 대한 송금지연 및 사후 평가의 문제점이 있으며, ⑨지방재정의 자율성 저해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상 문제가 제기되고, ⑩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국고보조사업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문제점 등이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문제점들을 재정리하여 서울시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준거로 활용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예산·결산서를 분석대상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현황 및 세부사업별 국고보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①서울시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 사업명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기준보조율도 준수되지 않은 지원사업의 수가 2014년 233건(74.4%), 2015년 304건(83.4%), 2016년 303건(84.4%)에 달하고, 보육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서비스 등의 기준보조율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0%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20%에 불과하며, 이러한 차등적 보조율을 적용받는 지원사업의 수가 28건에 이르는 등 기준보조율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②보조금 사업 및 교부금 변경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신규사업이나 신청한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대응 지방비 편성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경직화 현상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신규 국고보조금 사

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편성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침해당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③서울시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122개 사업에 비하여 1,037개의 세부사업으로 과도하게 세분화 되어 있고, 이 중 1억 미만 소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236건(22.7%)을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소액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의 성과 및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는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슷한 유형의 보조사업을 무분별하게 신청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세분화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④지출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과 이에 따른 대응 지방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적용에 있어 이미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있어 차등보조율을 적용 받는 이중적 차별 등이 서울시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세부사업별 국고보조금 운용 현황에서 파악된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문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불합리한 기준보조율에 있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있어서도 목적이나 파급효과, 위임사무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수준을 고려하는 등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②보조금 사업 및 교부금 변경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편성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상에 명문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포괄적 보조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③세분화 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명칭과 사업목적이 유사하고,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업의 경우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④사회복지분야 대응 지방비 부담에서는 명백히 중앙정부의 고유사무에 해당

하는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기준보조율의 상향조정과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고, 서울시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적용과 사회복지분야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이중적 차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부정책의 구현을 위한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탁되어 추진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관한 개선실태 내지는 개선사항에 관한 실행효과 검증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어】 :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 지원사업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국고보조금의 이론적 고찰	3
제 1 절 국고보조금의 의의	3
1) 국고보조금의 정의	3
2)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	3
3) 국고보조금의 유형	6
4) 국고보조금의 기능	7
5) 국고보조금 운용현황	8
제 2 절 국고보조금에 관한 선행연구	11
제 3 장 서울시 국고보조금의 운용현황 분석	14
제 1 절 국고보조금 현황	14
1) 서울시의 재정현황	14
2)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현황	17
제 2 절 국고보조금의 세부사업별 현황	20
제 4 장 서울시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49
제 1 절 서울시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문제점	49
1) 기준보조율 미준수	49
2) 보조금 사업 및 교부금 변경	50
3) 국고보조금의 세분화	51
4) 사회복지분야 대응 지방비 과중	51
제 2 절 서울시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개선방안	52

1) 불합리한 기준보조율 개선	52
2) 보조금 사업 및 교부금 변경 지양	53
3) 세분화 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통폐합	53
4) 사회복지분야 대응 지방비 부담 개선	54
 제 5 장 결 론	 56
 참 고 문 헌	 59
 ABSTRACT	 62



표 목 차

<표2-1>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과 대상사업	4
<표2-2> 차등보조율	5
<표2-3> 국고보조금 집행절차	6
<표2-4> 분류기준에 따른 국고보조금 유형	7
<표2-5>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정부지출 추이	9
<표2-6>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 현황	9
<표2-7> 분야별 지방자치단체 보조예산 현황	01
<표3-1> 서울시의 예산 현황	4
<표3-2> 서울시의 회계별 예산 현황	51
<표3-3> 서울시의 일반회계 예산 현황	51
<표3-4> 서울시의 특별회계 예산 현황	61
<표3-5> 서울시의 예산액 대비 국고보조금액 현황	71
<표3-6>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81
<표3-7>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91
<표3-8> 서울시의 분야별 국고보조금 현황	91
<표3-9> 서울시의 분야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02
<표3-10> 일반공공행정분야 지원사업 현황	22
<표3-11> 일반공공행정분야 년도별 지원사업 현황	22
<표3-12> 일반공공행정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32
<표3-13>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지원사업 현황	42
<표3-14>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년도별 지원사업 현황	42
<표3-15>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52
<표3-16> 교육분야 지원사업 현황	52
<표3-17> 교육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62
<표3-18> 교육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62
<표3-19> 문화 및 관광분야 지원사업 현황	72
<표3-20> 문화 및 관광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72

<표3-21> 문화 및 관광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92
<표3-22> 환경보호분야 지원사업 현황	13
<표3-23> 환경보호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23
<표3-24> 환경보호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33
<표3-25>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 현황	43
<표3-26> 사회복지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53
<표3-27> 사회복지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73
<표3-28> 보건분야 지원사업 현황	93
<표3-29> 보건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93
<표3-30> 보건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04
<표3-31> 농림해양수산분야 지원사업 현황	14
<표3-32> 농림해양수산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24
<표3-33> 농림해양수산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24
<표3-34> 산업중소기업분야 지원사업 현황	34
<표3-35> 산업중소기업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44
<표3-36> 산업중소기업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44
<표3-37> 수송 및 교통분야 지원사업 현황	54
<표3-38> 수송 및 교통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64
<표3-39> 수송 및 교통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64
<표3-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지원사업 현황	74
<표3-4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74
<표3-4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84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지역 경제·사회활동의 기회와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 시키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재원만으로는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을 마련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다.

그 결과, 국고보조금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 없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대응 지방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시행령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¹⁾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잘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의 가중,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약 등의 문제점이 그 간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 내지는 개선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 중의 하나인 국고보조금에 관한 운용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에 관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예산·결산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현황 및 세부사업별 국고보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국고보조금의 의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고, 국고보조금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재정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에 관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준거로 사용하였다.

이후 문헌연구를 통하여 설정된 준거를 토대로 서울시 국고보조금의 운용현황을 분석하여 운용상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제 2 장 국고보조금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국고보조금의 의의

1) 국고보조금의 정의

행정안전부(2017)에서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국가 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써 교부금, 국고부담금, 협의의 국고보조금을 포괄하는 것”으로 실무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2)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보조금법, 국가재정법 등이 있다.

이들 관련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에서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과 보조금의 종류, 예산신청시 행정안전부에 대한 보고조항이 있고, 보조금법에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규정이 있으며, 지방재정법에는 위임사무에 대한 중앙정부부담 조항이 있고, 국가재정법에는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회에 제출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 밖에 개별법에는 국고보조금의 근거, 중앙정부의 비용 부담 등의 조항이 있다.

각 법률별 국고보조금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27조의3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조항에는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관서의 무분별한 위임을 억제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의4에는 국고보조금의 관리를, 동법 제27조의5에는 국고보조사업의 이

력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에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에 관하여, 제7조에는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에 관하여, 제9조에는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국가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 및 대상사업 현황은 <표2-1>과 같다.

<표2-1>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과 대상사업

기 준 보 조 율	사 업 예 시
100%	일반여권발급, 지방병무행정지원, 침수지 배수개선, 중앙정부관리 방조제 개·보수, 지표수보강 농업용수개발,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수도권 50%), 산림병해충방제(약제대, 기타 50%), 원원종 및 원종생산, 농어민직업훈련지원
80%	발기반정비, 일반경지 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가뭄대비), 토양개량사업, 대규모 경지제정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어장정비정리, 어장정화, 인공어초시설, 어민복지회관건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연안, 근해·정액), 어촌 종합개발, 2종어항 개발, 임도건설, 농어촌 공공도서관 시설(자료구입비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서울 5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급여(서울 5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서울 50%), 저소득장애인 보장구·의료비·자녀학비 지원(서울 50%), 저소득모자·부자가정지원(서울 50%), 고용촉진 훈련
70%	도시종합개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한센병환자 정착촌, 그밖의 지역 30%),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오염해역준설, 조립사업, 사방사업, 휴양림 조성, 산촌종합개발(마을조성), 중앙정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서울 30%), 결핵환자보호시설운영, 한센환자보호시설운영(서울 50%), 부랑인보호시설 운영(서울 50%),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서울 50%), 경로연금(서울 50%), 응급의료사업 지원, 화장장·납골당·화장도시설
50%	119구조·구급대장비, 지방공사의료원 시설지원, 고도정수처리시설, 폐광오염방지시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우선 100%, 추가 70%), 비위생 매립지 정비, 시·관내 국도노후교량개체, 도립종묘배양장시설, 시·도 어업지도선 건조 및 유류비 지원, 수산물공동폐수 처리시설, 육림사업, 휴양림 보완 및 산림육장, 지방수목원, 산림박물관, 임산물유통구조개선, 농업전문 인력 양성교육, 지방농업개발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보강, 도 농업기술원 및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연구기반조성, 농업기계화훈련지원, 관광지·전적지 개발, 전국체육대회운영,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지원(도로), 지방체육시설, 농어촌출신학생 기숙사시설, 나양로자 지원, 전염병예방접종약품지원, 영·유아 보육사업지원(서울 20%),공립정신질환자시설, 시·도병원선 건조 및 운영 지원, 치매전문요양병원건립,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지원(단, 제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는 제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장비지원, 근로청소년회관운영지원, 지방과학관 시설
40%	농산물 공판장 건설,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 농수산물간이집하장 시설 및 장비, 어·폐류양식 및 중간종묘 생산 시설, 선전성대사이상검사

30%	민방위운영 및 시설·장비보강,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쓰레기매립시설, 쓰레기 소각시설(서울·시·군, 도서지역 50%, 광역시 40%), 도시형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수산물종합판매장시설, 산불방지시설·장비 및 운영, 표고생산기반조성,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시설, 공립박물관건립, 생활체육교실운영,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지원(경기장), 정신질환치료시설 확충
20%	과수·채소·화훼·특수작물생산·유통생산, 농수산물 규격출하, 농촌특산단지육성,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 노후어선 대체건조, 공공도서관 건립, 영·유아 보육사업지원(서울)
정액 보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농공단지 조성지원, 농어촌 오페수처리시설지원, 농림계 특성화대학 및 자영농고·축산교육시설지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중앙정부지원 지방도건설(공사비 국한),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공사비 국한), 경전철 건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근해), 항만배후 도로건설, 지방문예회관건립,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및 장비, 석탄비축 및 진흥지구개발, 광산기반시설확충 및 대체산업 육성

자료: 김동기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 p186, 법문사, 2009

보조금법 제10조 내지 동법 시행령 제5조에는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20%, 15%, 10%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는 인상보조율과 기준보조율에서 20%, 15%, 10%를 각각 빼고 적용하는 인하보조율이 있으며,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차등보조율에 관한 산정방식은 <표2-2>와 같다.

<표2-2> 차등보조율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제정자주도	가. 산식: $\{(\text{지방세수입}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교부세} + \text{재정보전금} + \text{조정교부금}) / \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나.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제정자주도를 사용한다.
분야별재정지출 지수	가. 산식: $\{(\text{분야별 세출예산 순계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 \text{세출예산 순계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times 100$ 나. 분야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기능 분류에 따른 13개 분야(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각각의 예산 규모를 말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를 사용한다.

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보조금법 제12조에는 보조금 예산의 통지에 관하여, 제13조에는 지방비 부담 의무에 관하여, 제19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국고보조금의 집행절차는 <표2-3>과 같다.

<표2-3> 국고보조금 집행절차

(자치단체)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16) - 사업계획 첨부
(중앙관서)	교부통지 및 교부	■ 보조사업 검토(\$17,19) - 법적합성·적정성·자부담 능력 등 ■ 필요한 교부조건 첨부 가능(\$18)
(자치단체)	보조사업 수행	■ 사정변경 교부취소(\$21) - 천재지변 등 사유시 ■ 용도의 사용금지(\$22) ■ 내용·경비배분 변경(\$23, 중앙관서 승인시) ■ 사업 인계·중단·폐지(\$24, 중앙관서 승인시) ■ 수행상황보고(\$25) - 필요시 수행명령 가능(\$26)
	교부취소	■ 용도의 사용, 법령·교부내용 위반, 허위·부정 교부시 전부(일부) 취소(\$30)
	사업완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처분 제한(\$35) - 他용도 사용, 양도·교환, 담보제공 불가(승인시 가능)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적보고	■ 사업완료, 폐지, 회계연도 종료시(\$27) - 소요경비 재원별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시정명령	■ 사업수행 적합성 결여시(\$29)
(중앙관서)	금액확정	■ 보조사업 수행여부, 적합성 심사(\$28) - 증빙자료 검사, 현지조사 등
(중앙관서)	반환명령	■ 초과액(집행잔액, 이자) 반환명령(\$31)
	이의신청	■ 통지·처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37)
	절 감 액 사 용 (\$31④항)	사용계획 제출 ↓ 사용명세 제출 ↓ 사용명세 검토 ■ 사용 대상시기·금액 등 ■ 사용후 1개월 이내 ■ 결감여부, 사용범위 등
(자치단체)	국고반환	■ 초과액 반환
(중앙관서)	강제징수	■ 상계처리 가능(\$32) - 동종 사무(사업)의 보조금 교부시 ■ 국세징수의 예 준용(\$33)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0.7.13.

3) 국고보조금의 유형²⁾

국고보조금의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겠는데, 사용용도, 교부조건, 지방비 부담방식, 보조율 기준, 지원규모의 제한여부, 법령근거 및 경비부담 기준, 시행주체, 지원대상, 사전 신청여부, 지원내용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유형별 세부적인 특성은 <표2-4>와 같다.

2) 2017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표2-4> 분류기준에 따른 국고보조금 유형

분류기준	종류	특성
사용용도	특정보조금	용도가 지정이 되어있고 매우 구체적인 재원으로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이 이에 해당
	일반보조금	용도 제한이 없는 재원으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가 해당 됨
교부조건	특정보조금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사용목적에 제한, 보조대상 행정수준에 대해 규제하는 등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조건 있음
	포괄보조금	교부조건이 특정보조금에 비해 포괄적임
지방비 부담방식	정액보조금	사업의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매년 일정비율이 아닌 일정액을 교부
	정률보조금	전체 사업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것으로 기준보조율, 차등보조율 형식으로서 국고보조금의 기본적인 지원방식
보조율 기준	일률보조금	지역적인 차이 없이 모두 동일하게 보조
	차등보조금	재정이나 수요 등 필요에 따라서 지역마다 차등적으로 보조
지원규모의 제한여부	개방형 보조	중앙정부가 총액제한 없이 분담할 비중만을 정함
	폐쇄형 보조	총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보조금
법령근거 및 경비부담 기준	교부금	선거(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국민투표 등 중앙 정부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위임함에 있어 사업비 전액 교부
	부담금	재해복구, 의료보호, 전염병 예방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 부과하는 것으로서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
	협의의 보조금	임대주택, 농수산물시장 건립 등 특정 행정사무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비 지원
시행주체	직접보조금	자전거도로 정비, 재해 위험지구 정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보조금이라고 함
	간접보조금	경지정리사업, 양식장 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민간사업자나 타기관에 재교부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임
	민간보조금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운영비나 자금을 지원
사전신청 여부	신청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사전신청에 따라 교부
	무신청보조금	보조금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으로서 재해나 재난 등 사전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 교부
지원내용	경상보조금	경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이 해당 됨
	자본보조금	자본적 경비 보조로서, 자산취득비, 시설건축비, 토지매입비 등이 해당 됨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 2014

4) 국고보조금의 기능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존재하는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 간 세원 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 하는 기능이 있다(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2017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17)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업에 있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공공재의 외부효과나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정 공공재를 중앙정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을 공급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중앙정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추진을 가능케 하는 기능이 있다.

5) 국고보조금의 운용현황

2013년 이후 최근 5년 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2013년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정부의 총 지출액 349.2조원 중 50.5조원 이었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37.8조원, 민간 보조금은 12.7조원으로 정부 총 지출액 대비 14.5%를 차지하였다.

2014년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정부의 총 지출액 355.8조원 중 52.5조원 이었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40.0조원, 민간 보조금은 12.5조원으로 정부 총 지출액의 14.8%를 차지하였다.

2015년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정부 총 지출액 375.4조원 중 58.3조원으로 이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45.1조원, 민간 보조금은 13.2조원으로 정부 총 지출액 대비 15.5%를 차지하였다.

2016년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정부 총 지출액 386.4조원 중 62.3조원으로 이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47.5조원, 민간 보조금은 14.8조원으로 정부 총 지출액 대비 15.6%를 차지하였다.

2017년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정부 총 지출액 400.5조원 중 59.6조원으로 이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46.4조원, 민간 보조금은 13.2조원으로 정부 총 지출액 대비 14.9%를 차지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총 지출액은 연평균 0.7% 증가 하였으나, 국

고보조금은 연평균 4.4% 증가 하였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연평균 5.4%, 민간 보조금은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2-5>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정부지출 추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보조금규모	합 계	50.5	52.5	58.3	62.3	59.6	4.4%
	지방자치단체보조	37.8	40.0	45.1	47.5	46.4	5.4%
	민간보조	12.5	12.5	13.2	14.8	13.2	1.3%
정부 총지출(조원)		349.2	355.8	375.4	386.4	400.5	3.5%
정부 총지출대비 보조금 규모		14.5%	14.8%	15.5%	15.6%	14.9%	0.7%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국고보조금은 2017년 예산 기준으로 43조 4,869억원이고, 대응 지방비는 21조 7.75억으로 총 국고보조사업비 65조 2,045원의 67%를 국고보조금이 부담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비 중 지방재정이 부담하는 비중은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락이 있으나, 2013년에 40%에서 2017년에 33.0%로 점차 하락하였다.

<표 2-6>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3	구성비	2014	구성비	2015	구성비
국고보조사업	567,164	100	610,786	100	644,332	100
국고보조금	340,347	60.0	377,463	61.8	414,078	64.0
지방비부담	226,817	40.0	233,323	38.2	230,244	36.0
	2016	구성비	2017	구성비		
국고보조사업	671,376	100	652,045	100		
국고보조금	428,646	63.8	434,869	67.0		
지방비부담	242,730	36.2	217,175	33.0		

자료: 2017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p106

<표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은 2013년의 36조 7,552억원에서 2017년에는 46조 4,318억원으로 26.3%의 증가율을 보였고,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모두 5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교육, 과학기술, 교통 및 물류, 교통 및 지역개발은 하락하였다.

<표2-7> 분야별 지방자치단체 보조예산 현황

(단위: 억원,%)

분야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가율
계	367,552	400,098	450,978	460,434	464,318	26.3
사회복지	185,244	222,404	257,657	271,439	281,118	51.8
농림수산	53,840	55,956	57,726	57,277	56,455	4.9
환경	37,565	38,477	46,053	44,929	44,435	18.3
문화 및 관광	17,369	16,293	18,872	20,899	21,542	24.0
교통 및 물류	24,342	19,706	20,329	18,709	15,657	△35.7
국토 및 지역개발	16,396	15,561	14,058	13,555	12,774	△22.1
보건	6,682	7,811	10,299	10,386	10,462	56.6
공공질서 및 안전	8,988	8,197	10,256	8,251	8,098	△9.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715	7,069	7,805	7,983	6,975	3.9
일반·지방행정	7,717	7,219	7,377	6,332	6,287	△18.5
과학기술	568	171	334	494	301	△47.0
외교·통일	116	118	118	114	114	△1.7
국방	0	50	35	15	57	-
교육	2,010	1,066	56	53	42	△97.9

자료: 기획재정부

제 2 절 국고보조금에 관한 선행연구

국고보조금에 관한 선행연구로 국고보조금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고보조금 운용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재정운영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 조정제도 운영상 개선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중심으로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황의윤(2002)은 국고보조금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①사업비 보조내시 및 자금송금 지연의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곤란하고, 수시 변경으로 인한 지방재정 운영의 차질 초래, ②신청주의 형식화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후 신청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거나 신청 없는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 재정운영의 경직성 초래, ③보조지원 대상사업의 평가미흡의 문제점으로 추진 성과에 대한 점검과 예산지원의 효율성 평가가 미흡, ④지방비 부담액 임의조정의 문제점으로 법령의 기준보조율 미준수, 기준보조율 타당성 분석미흡, 차등보조율제도 활용저조, 광역과 기초 간 지방비 부담을 제시, ⑤지방재정의 자율성 제약의 문제점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배·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⑥보조사업 관리미흡의 문제점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장민규(2009)는 국고보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①세분화된 사업 중 일부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정치·경제적 작용에 의한 기준보조율 부적정, ②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차등보조율 제도 미적용, ③국고보조금의 정치적 성격으로 투명성과 명확성 미확보, ④교부시기의 부적정으로 사고 또는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 ⑤엄격한 조세법률주의 적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적인 재정 사용의 제약, ⑥일률적인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지역간의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박영웅(2011)은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용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① 재정부담 능력에 비해 국고보조금이 낮은 비율로 지원될 경우 과도한 지방비 부담 야기, ②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보조율의 부적절성, ③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경우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의 타당성, ④사업의 비대화로 사업 운영의 경직화 등 사업건수와 규모의 과다, ⑤집행실적의 부진 및 집행 잔액의 과도한 이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대균(2012)은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국고보조금 제도에서 ①법에서 정한 기준보조율과 부담비율의 미준수, ②국고보조 사업의 세분화, ③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증가, ④보조금 제도의 정치적 성격, ⑤횡령, 부당사용 등 도덕적 해이, ⑥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부재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최덕재(2007)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대상사업과 성격에 따라 상이함으로 지방재정과 여건에 따라 달라져야 함에도 소관부처에 따라 기준보조율 보다 대응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김병태(2008)는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에서 ①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배분 기준과 개별사업의 외부효과 정도에 따른 보조대상 사업선정의 불명확성, ②힘의 논리로 결정되고 있는 기준보조율의 비합리성, ③중앙정부의 감시·감독·관리로 인한 지방재정 자율성 저해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곽승기(2016)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영상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①지방비 부담 비율의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의 경직화, ②세분화된 사업 기준으로 사업대상 및 건수 과다, ③법령상 정해진 기준보조율 미준수, ④차등보조율제도의 활용 저조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순으로 국고보조금 제도상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①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사업 대상 및 기준보조율이 미준수 되고 있고, ②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차등보조율 선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일괄성과 논리적 근거가 취약하며, ③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의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편성으로 재정의 자율성에 대한 훼손 우려, ④국고보조금의 영세화와 세분화 로 인한 유사·중복 사업의 과다, ⑤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과도한 증가 등의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제 3 장 서울시 국고보조금의 운용현황 분석

제 1 절 국고보조금 현황

1) 서울시의 재정현황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3조 7,890억원(2012년 대비 6.6% 증가), 2014년 24조 9,692억원(2013년 대비 4.9% 증가), 2015년 26조 5,137억원(2014년 대비 6.2% 증가), 2016년 29조 8,223억원(2015년 대비 12.5% 증가), 2017년 29조 8,011억원(2016년 대비 0.1% 감소)으로 <표3-1>과 같다.

<표3-1> 서울시의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년도	총계예산	증감액	전년도대비(%)
2013	23,789,045	1,513,418	6.6
2014	24,969,266	1,180,221	4.9
2015	26,513,778	1,544,512	6.2
2016	29,822,376	3,308,598	12.5
2017	29,801,117	△21,259	△0.1

자료: 서울시 재정포털 예산현황 참고, 연구자 정리

서울시의 최근 5년간 회계별 예산현황은 <표3-2>와 같고, 이 중 분야별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표3-3>과 같다.

<표3-3> 서울시의 분야별 일반회계 예산현황에서 주목할 점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2013년 약4조 8,000억원을 기점으로 2014년 약 5조 4,000억원, 2015년 6조 3,000억원, 2017년에는 7조 원 대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최근 사회복지분야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사회복지 지출의 총량이 증가함에서 기인된 것이다.

<표3-2> 서울시의 회계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년도	총계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년도대비(%)
2013	23,789,045	15,883,886	7,905,159	6.6
2014	24,969,266	17,342,767	7,626,499	4.9
2015	26,513,778	19,014,868	7,498,910	6.2
2016	29,822,376	20,984,104	8,838,272	12.5
2017	29,801,117	20,639,809	9,161,308	△0.1

자료: 서울시 재정포털 예산현황 참고, 연구자 정리

<표3-3> 서울시의 일반회계 예산 현황

(단위:10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합계	15,883	17,342	19,014	20,984	20,639
일반공공행정	3,601	4,192	4,193	5,388	4,878
공공질서및안전	137	151	204	754	775
교육	2,590	2,689	2,935	3,053	3,083
문화및관광	428	451	541	533	579
환경보호	377	356	371	474	472
사회복지	4,844	5,487	6,258	6,713	6,939
보건	296	312	418	391	414
농림해양수산	10	9	12	16	22
산업중소기업	250	211	378	273	203
수송및교통	943	1,010	1,079	1,130	907
국토및지역개발	1,221	1,185	1,244	1,305	1,349
과학기술	-	-	-	1	2
예비비	92	130	156	152	175
기타	1,087	1,153	1,218	795	835

자료: 서울시 재정포털 예산현황 참고, 연구자 정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계예산 기준으로 서울시의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건설,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주택사업, 도시개발, 하수도사업,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의료급여기금, 한강수질개선, 재정비축진, 기반시설부담금, 소방안전, (공)수도사업, (공)지역개발기금 등 14개 분야로 구성된다.

서울시의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 7조 9,051억원(2012년 대비 15.6% 증가), 2014년 7조 6,264억원(2013년 대비 3.5% 감소), 2015년 7조 4,989억원(2014년 대비 1.7% 감소), 2016년 8조 8,382억원(2015년 대비 17.9% 증가), 2017년 9조 1,613억원(2016년 대비 3.7% 증가)으로 <표 3-4>과 같다.

<표 3-4> 서울시의 특별회계 예산 현황

(단위:10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합계	7,905	7,626	7,498	8,838	9,161
도시철도건설비	1,207	1,114	899	1,268	1,409
교통사업	1,181	1,224	1,188	1,227	1,145
광역교통시설	98	149	145	92	124
주택사업	1,553	1,305	1,382	1,392	1,826
도시개발	1,163	1,246	1,041	1,361	1,314
하수도사업	603	700	727	781	791
집단에너지공급	269	246	263	254	-
의료급여기금	819	826	888	934	978
한강수질개선	15	19	20	30	28
재정비축진	-	-	-	-	-
소방안전	-	-	-	721	751
기반시설부담금	-	-	-	-	-
(공)수도사업	814	791	763	772	790
(공)지역개발기금	176	2	177	0.3	-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2)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현황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의 예산액 대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교부금액을 살펴보면, 2014년은 예산액 24.9조원 중 국고보조금은 5.8조원(서울시 예산액 대비 23.29%), 2015년은 예산액 26.5조원 중 국고보조금은 6.6조원(서울시 예산액 대비 24.91%), 2016년은 예산액 29.8조원 중 국고보조금은 6.8조원(서울시 예산액 대비 22.81%)를 차지하였으며, 세부현황은 <표3-5>과 같다.

<표3-5> 서울시의 예산액 대비 국고보조금액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4	2015	2016
예산(a)	24.9	26.5	29.8
국고보조금(b)	5.8	6.6	6.8
비율(b/a×100)	23.29%	24.91%	22.81%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표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명과 기준보조율이 일치하는 사업의 수는 2014년 313건 중 19건, 2015년 365건 중 10건, 2016년 359건 중 11건으로 대부분이 정액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특별회계 사업이었다.

또한 대상사업명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과 일치하긴 하지만 기준보조율이 준수되지 않은 지원사업의 수는 2014년에 61건으로 이 중 기준보조율 미만으로 교부된 사업이 37건, 기준보조율 이상으로 교부된 사업이 24건이었고, 2015년에 51건으로 이 중 기준보조율 미만으로 교부된 사업이 37건, 기준보조율 이상으로 교부된 사업이 14건이었으며, 2016년에 45건으로 이 중 기준보조율 미만으로 교부된 사업이 26건, 기준보조율 이상으로 교부된 사업이 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으로써 대상사업명이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기준보조율도 명시되어 있

지 않는 지원사업의 수가 2014년에 233건(74.4%), 2015년에 304건(83.4%), 2016년에 303건(84.4%)으로 나타났다.

<표3-6>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서울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연도	지원사업 수	보조금 교부 현황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명과 일치하는 사업			중앙 정부가 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
		기준보조율 준수	기준보조율 미준수		
			미만	이상	
2014	313	19	37	24	233
2015	365	10	37	14	304
2016	359	11	26	19	303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표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은 예산편성 기준 국고보조 사업비는 5.8조원(국고보조금 2.8조원, 대응 지방비 3.0조원)이었으나, 결산기준 0.5조원 증액되어 6.3조원(국고보조금 3.0조원, 대응 지방비 3.3조원)으로 늘어났다.

2015년은 예산편성 기준 국고보조 사업비는 6.6조원(국고보조금 3.4조원, 대응 지방비 3.2조원)이었으나, 결산기준 0.4조원 증액되어 7.0조원(국고보조금 3.7조원, 대응 지방비 3.3조원)으로 늘어났다.

2016년은 예산편성 기준 국고보조 사업비는 6.8조원(국고보조금 3.5조원, 대응 지방비 3.3조원)이었으나, 결산기준으로는 0.9조원 증액되어 7.7조원(국고보조금 4.0조원, 대응 지방비 3.7조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보조금의 변경이 발생된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이후 간주처리³⁾를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에 관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3)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국회의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가내시 예산안을 통보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근거로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추후 국회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부처별로 지방자치단체에 확정된 예산을 통보하는 제도

<표3-7>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예산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4	2015	2016
계	5.8(100%)	6.6(100%)	6.8(100%)
국고보조금	2.8(48.3%)	3.4(51.5%)	3.5(51.5%)
대응 지방비	3.0(51.7%)	3.2(48.5%)	3.3(48.5%)

자료: 서울시 2014~2016년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등 12개 분야로 분류되어 지원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현황은 <표3-8>과 같다.

<표3-8> 서울시의 분야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백만원)

분야별	2014		2015		2016	
	건수 (비율)	국고보조금 (비율)	건수 (건수)	국고보조금 (비율)	건수 (건수)	국고보조금 (비율)
합계	313 (100)	2,918,328 (100)	365 (100)	3,629,143 (100)	359 (100)	3,752,257 (100)
일반공공행정	13 (4.2)	4,078 (0.1)	16 (4.4)	5,668 (0.15)	17 (4.8)	5,195 (0.1)
공공질서및안전	17 (5.5)	16,134 (0.6)	19 (5.3)	28,234 (0.7)	15 (4.1)	22,215 (0.7)
교육	1 (0.3)	200 (0.01)	1 (0.3)	601 (0.02)	2 (0.5)	650 (0.02)
문화및관광	38 (12.1)	160,116 (5.4)	44 (12.1)	93,116 (2.5)	52 (14.5)	105,593 (2.9)
환경보호	35 (11.0)	67,238 (2.3)	48 (13.1)	94,711 (2.6)	50 (13.9)	156,315 (4.1)
사회복지	110 (35.1)	2,502,959 (85.7)	114 (31.2)	3,038,612 (83.7)	107 (29.8)	3,180,261 (84.8)
보건	36 (11.5)	13,923 (0.5)	46 (12.7)	31,286 (0.8)	32 (9.0)	16,769 (0.5)
농림해양수산	25 (8.0)	33,260 (1.1)	29 (7.9)	5,961 (0.1)	34 (9.4)	2,453 (0.01)
산업중소기업	5 (1.6)	17,607 (0.6)	7 (1.9)	39,322 (1.0)	5 (1.4)	17,089 (0.5)
수송및교통	16 (5.2)	171,035 (5.8)	19 (5.2)	233,880 (6.4)	21 (6.0)	200,231 (5.3)
국토및지역개발	17 (5.5)	33,960 (1.2)	20 (5.4)	67,249 (1.8)	22 (6.1)	36,309 (1.0)
기타	- (0)	(0)	2 (0)	(0)	2 (0.5)	304 (0.01)

자료: 서울시 2014~2016년 재원별 예산 현황 참고, 연구자 정리

제 2절 국고보조금의 세부사업별 현황

<표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12개 분야에 총 1,037개 사업이 지원되었다.

<표3-9> 서울시의 분야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분야	계		10%미만	10%이상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
계	사업수(건)	1,037	118	352	416	151
	비율(%)	100.0	13.5	31.6	41.2	13.7
일반공공 행정	2014	13	1	6	2	4
	2015	16	—	7	3	6
	2016	17	—	8	4	5
	소계	46	1	21	9	15
공공질서 및 안전	2014	17	4	5	5	3
	2015	19	2	7	6	4
	2016	15	2	2	9	2
	소계	51	8	14	20	9
교육	2014	1	—	1	—	—
	2015	1	—	1	—	—
	2016	2	1	—	1	—
	소계	4	1	2	1	0
문화및관광	2014	38	5	7	21	5
	2015	44	2	8	25	9
	2016	52	6	11	28	7
	소계	134	13	26	74	21
환경보호	2014	35	4	15	13	3
	2015	48	5	20	15	8
	2016	50	6	24	15	5
	소계	133	15	59	43	16
사회복지	2014	110	11	46	47	6
	2015	114	10	45	52	7
	2016	107	15	44	45	3
	소계	331	36	135	144	16
보건	2014	36	5	9	19	3
	2015	46	8	14	21	3
	2016	32	4	14	12	2
	소계	114	17	37	52	8

농림해양수산	2014	25	6	1	9	9
	2015	29	4	3	13	9
	2016	34	5	4	16	9
	소계	88	15	8	38	27
산업 중소기업	2014	5	1	1	3	—
	2015	7	—	4	3	—
	2016	5	—	2	3	—
	소계	17	1	7	9	0
수송및교통	2014	16	3	4	6	3
	2015	19	1	9	5	4
	2016	21	3	14	3	1
	소계	56	7	27	14	8
국토및지역개 발	2014	17	2	4	4	7
	2015	20	1	6	3	10
	2016	22	1	6	5	10
	소계	59	4	16	12	27
기타	2014	—	—	—	—	—
	2015	2	—	—	—	2
	2016	2	—	—	—	2
	소계	4	0	0	0	4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1) 일반공공행정분야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표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4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은 14,941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이 중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사업은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1개 사업이고, 그 외 사업은 대상사업명이 상이하거나 개별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들이다.

<표3-10> 일반공공행정분야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일반공공행정	46	14,941	13	4,078	16	5,668	17	5,195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연도별 세부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은 <표3-11>과 같다.

<표3-11> 일반공공행정분야 년도별 지원사업 현황

년도	세부사업명
2014 (13건)	시설물(도로명판)유지관리, 도로명주소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도 행정정보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6.25전쟁 남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자원봉사센터 민관파트너쉽 구축, 종합정보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정보취약계층 사량의 PC 보급, 시군구행정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2015 (16건)	서울특별시 지리지 제작 및 발간,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시설물(도로명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6.25전쟁 남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정보취약계층 사량의 PC 보급,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중랑천 녹색 문화벨트 조성, 시도 행정정보화.
2016 (17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민방위대 교육훈련, 소방차량 대체차,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특수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수난구조대 운영, 소방사업,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표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46개 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이 1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1개, 10% 이상 5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21개, 50% 이상 10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9개, 100% 적용된 사업은 15개 사업이다.

<표3-12> 일반공공행정분야 보조유별 지원사업 현황

보조율		세부사업명
10% 미만	2014	시설물 도로명판 유지관리
	2015	-
	2016	-
10%이상 50%미만	2014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시도행정정보화, 자원봉사센터 민간파트너쉽 구축,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2015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시설물(도로명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시도 행정정보화,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2016	시설물(도로명판,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지역희망박람회 서울전시관 운영, 시도 행정정보화,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50%이상 100%미만	2014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체계 구축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2015	서울특별시 지리지 제작 및 발간,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6.25전쟁 남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2016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자치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국내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
100%	2014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6.25전쟁 남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2015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016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 지원, 중앙천 녹색 문화벨트 조성,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6.25전쟁 남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 지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표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5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은 14,941백만원이 지원 되었다. 이중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사업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 2개 사업이고, 그 외 사업은 대상사업명이 상이하거나 개별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들이다.

<표3-13>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공공질서 및 안전	51	66,583	17	16,134	19	28,234	15	22,215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연도별 세부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은 <표3-14>과 같다.

<표3-14>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년도	세부사업명
2014 (17)	민방위대원교육훈련, 지역민방위대방독면 확충, 사방댐 조성관리, 사방사업, 119종합상황실전산시스템운영, 구급장비유지관리및보강, 대테러장비보강, 특수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소방항공대운영, 소방보조인력양성및운영, 소방차량대폐차,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예방업무추진 향상, 재난피해자심리안정지원,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재난관리우수지자체지원.
2015 (19)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방사업,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특수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소방항공대 운영,수난구조대 운영,대테러장비 보강 소방차량 대폐차,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사방댐 조성관리.
2016 (15)	시설물(도로명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지역희망박람회 서울전시관 운영, 시도 행정정보화,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자치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국내중소기업 ICT 인프라 구축, 6.25전쟁 납북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표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51개 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이 1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8개, 10% 이상 5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14개, 50% 이상 10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20개, 100% 적용된 사업은 9개 사업이다.

<표3-15>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보조유별 지원사업 현황

보조율		세부사업명
10% 미만	2014	구급장비유지관리보강, 소방항공대운영, 예방업무추진향상, 소방차량 대폐차.
	2015	소방항공대 운영,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2016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10%이상 50%미만	2014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운영, 특수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대테러장비 보강,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2015	수난구조대 운영, 대테러장비 보강, 소방차량 대폐차, 특수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2016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민방위대 교육훈련
50%이상 100%미만	2014	재난피해자심리안전지원,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사방사업, 사방댐 조성관리,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2015	재난피해자 심리안전지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사방사업, 사방댐 조성관리,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2016	소방차량 대폐차, 재난피해자 심리안전지원,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특수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수난구조대 운영,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사방사업,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100%	2014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훈련,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
	2015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2016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3) 교육분야

교육분야는 <표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은 1,451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이들 사업들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사업명과 상이하거나 개별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들이다.

<표3-16> 교육분야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교육	4	1,451	1	200	1	601	2	650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편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분야의 연도별 세부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은 <표3-17>과 같다.

<표3-17> 교육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년도	세부사업명
2014 (1건)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2015 (1건)	평생교육 진흥원 설립 운영
2016 (2건)	평생교육 진흥원 설립 운영,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표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134개 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이 1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13개, 10% 이상 5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26개, 50% 이상 10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74개, 100% 적용된 사업은 21개 사업이다.

<표3-18> 교육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보조율		세부사업명
10% 미만	2015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10%이상 50%미만	2015	평생교육 진흥원 설립 운영
	2016	평생교육 진흥원 설립 운영
50%이상 100%미만	2016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4) 문화 및 관광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는 <표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13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은 358,825백만원 지원 되었다.

이 중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사업은 2014년에 중앙정부지정문화재 보수,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등 2개 사업이고, 2015년에 장애인도서관육성지

원, 작은도서관육성지원,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중앙정부지정문화재 보수,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노원구 제2구민체육관 건립 지원,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등 9개 사업이며, 2016년에 신도림 도서관 건립, 공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건립,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불암 문화정보 도서관 건립, 중앙정부지정문화재 보수,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서대문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등 9개 사업이다.

그 외 사업은 대상사업명이 상이하거나 개별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들이다.

<표3-19> 문화 및 관광분야 지원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문화 및 관광	134	358,825	38	160,116	44	93,116	52	105,593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 및 관광분야의 연도별 세부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은 <표3-20>과 같다.

<표3-20> 문화 및 관광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년도	세부사업명
2014 (38건)	공공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지원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도서관다문화프로그램 서비스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공동사업 지원, 전통사찰보수 정비지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문화예술 시민대학, 사립박물관 활성화 지원, 천연기념물 관리, 살곶이다리 원형복원,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종묘광장 정비, 초안산 분묘군 복원, 중앙정부지정문화재 보수, 풍납토성 복원, 정보자료 관리 및 자료실 운영 관리, 해설사와 함께하는서울 도보관광 코스 개발운영,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지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운현궁 위탁운영, 한양도성 원형 발굴조사 및 연구, 한양도성 주변 완충지대 보존 관리기준 수립 용역, 한양도성 정밀실측 및 관리구간 표시, 서울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북한산성 보수보존, 서울 한양도성 보수복원,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세계유산 등재신청용 첨부자료 제작,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문화유산학교 운영 지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 및 등재 추진, 서울 한양도성 단절된 성곽구간 잇기 사업.

2015 (44건)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공릉동 문화복합센터 내 도서관 건립 지원,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도서관다문화프로그램서비스지원, 서울시 도서관 통합서비스 구축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 전통사찰보수 정비지원,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아차산 문화벨트) 지원,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천연기념물 관리,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살곶이다리 원형복원, 종묘광장 정비, 초안산 분묘군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풍납토성 복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전통문화 발굴 지원사업,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지원, 생생문화재 사업, 운현궁 위탁운영,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한양도성 정밀실측, 북한산성 보수보존,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서울 한양도성 단절된 성곽구간 잇기 사업, 한양도성 경관저해시설 개선, 한양도성 재난방지 사업,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 한양도성 보수·정비, 세계유산 등재신청용 첨부자료 제작 한양도성 주변 완충지대 보존 관리기준 수립 용역,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2016 (52건)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체부동 성결교회 매입 및 활용, 서울놀이마당 지원, 생활음악공간 조성, 한양도성 안내관 개선 및 확충, 신도림 도서관 건립,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풍납토성 복원, 전통문화 발굴 지원사업,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허준박물관 건립,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책이음서비스 구축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공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한양도성 보수·정비, 한양도성 학술조사 및 연구,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한양도성 정밀실측, 생생문화재 사업, 독서당 인문이카데미 조성지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전통사찰보수 정비지원,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아차산 문화벨트) 지원, 종묘광장 정비, 살곶이다리 원형복원, 풍납토성 복원(일반),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조선왕릉 문화벨트) 지원, 북한산성 보수,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지원,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건립,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 한양도성 재난방지 사업,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초안산 분묘군 복원.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표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134개 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이 1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13개, 10% 이상 5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26개, 50% 이상 10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74개, 100% 적용된 사업은 21개 사업이다.

<표3-21> 문화 및 관광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보조율		세부사업명
10% 미만	2014	정보자료 관리 및 자료실 운영 관리, 사립박물관 활성화 지원,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 및 등재 추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지원.
	2015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2016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거리노숙인 보호,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0%이상 50%미만	2014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 도보관광 코스 개발·운영,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용 첨부자료 제작, 운현궁 위탁운영, 문화예술 시민대학,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2015	운현궁 위탁운영, 전통문화 발굴 지원사업, 세계유산 등재신청용 첨부자료 제작,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2016	책이음서비스 구축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종묘광장 정비,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허준박물관 건립,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한양도성 정밀실측, 궁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생생문화재 사업,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조성지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전통사찰보수 정비지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 초안산 분묘군 복원, 살곶이다리 원형복원, 풍납토성 복원(일반),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아차산 문화벨트) 지원, 북한산성 보수보존,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조선왕릉 문화벨트)지원,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지원,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한양도성 재난방지 사업,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

50%이상 100%미만	2014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종묘광장 정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초안산 분묘군 복원,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서울 한양도성 보수복원, 풍납토성 복원, 한양도성 원형 발굴조사 및 연구, 한양도성 주변 완충지대 보존 관리기준 수립 용역, 한양도성 정밀실측 및 관리구간 표시, 살곶이다리 원형복원, 서울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서울 한양도성 단절된 성곽구간 잇기 사업, 보존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지원, 천연기념물 관리, 북한산성 보수.
	2015	서울시 도서관 통합서비스 구축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종묘광장 정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생생문화재 사업,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초안산 분묘군 복원, 풍납토성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서울 한양도성 단절된 성곽구간 잇기 사업, 살곶이다리 원형복원, 한양도성 경관재해시설 개선, 한양도성 재난방지 사업, 한양도성 주변 완충지대 보존 관리기준 수립 용역,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한양도성 정밀실측한양도성 보수정비, 북한산성 보수·보존, 천연기념물 관리,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2016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서울놀이마당 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체부동 성결교회 매입 및 활용, 생활음악공간 조성, 한양도성 안내관 개선 및 확충, 신도림 도서관 건립,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풍납토성 복원전통문화 발굴 지원사업,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한양도성 보수·정비, 한양도성 학술조사 및 연구,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책이음서비스 구축지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허준박물관 건립,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한양도성 정밀실측공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생생문화재 사업, 종묘광장정비,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조성지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초안산 분묘군 복원, 살곶이다리 원형복원, 풍납토성 복원(일반), 북한산성 보수, 한양도성 재난방지 사업,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구로 아시아현대미술관 지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아차산 문화벨트)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조선왕릉 문화벨트) 지원,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지원,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건립
100%	2014	공공도서관 체형형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지원, 도서관다문화프로그램서비스지원, 문화유산학교 운영 지원,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공동사업 지원.
	2015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공릉동 문화복합센터 내 도서관 건립 지원, 도서관다문화프로그램서비스지원,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아차산 문화벨트)지원.
	201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민간주도형).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5) 환경보호분야

환경보호분야는 <표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13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은 358,825백만원이 지원 되었다.

이 중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사업은 2014년에 숲가꾸기 사업, 구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지원,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빛물품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4개 사업이고, 2015년에 숲가꾸기사업, 노후하수관로정비,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3개 사업이며, 2016년에 산림경영계획, 산림서비스 증진, 숲가꾸기사업,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성북구 석관동 재활용 선별장 시설 개선, 서울 재활용 프라자 조성,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등 8개 사업이다.

그 외 사업은 대상사업명이 상이하거나 개별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들이다.

<표3-22> 환경보호분야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환경보호	133	156,315	35	67,238	48	94,711	50	156,315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환경보호분야의 연도별 세부적인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은 <표3-23>과 같다.

<표3-23> 환경보호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년도	세부사업명
2014 (35건)	한강로 일대 방제시설 확충사업(유역분할), 저녹스버너 보급,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대추진, 자원화수시설유탁운영(양천노원강남미포), 산림경영계획, 목재생산 기반조성, 사유림 경영정보DB 구축, 산림서비스 증진, 숲가꾸기 사업, 북한산 산사길 탐방로 조성사업,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산불방지 대책, 토착수종 식재 및 도사숲 복원, 산림병해충 방제, 성북구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 서울 제사용 플라자 조성, 수질오염원 관리,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사회복지시설 건물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서울그린페스티벌(환경영화제) 지원,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그린카 보급,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육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친환경운전장치 부착, 「서울의제2」 실천,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빛물림프정간 하수암거 정비,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보조),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2015 (48건)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추진, 생태놀이터 조성,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아차산 문화벨트), 서울둘레길 유자관리, 토착수종 식재 및 도사숲 복원, 근교산 지락길 조성, 근교산 등산로 정비, 목재생산 기반조성, 사유림 경영정보DB 구축, 산림서비스 증진, 산불방지 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구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지원, 서울 제사용 플라자 조성,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서울의제2」 실천,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재펠릿 보급 확대,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육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숲가꾸기 사업, 중앙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저녹스버너 보급,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본래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서울그린페스티벌(환경영화제) 지원, 전기이륜차 보급,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그린카 보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한강로 일대 방제시설 확충사업(유역분할),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빛물림프정 간 하수암거 정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북한산 산사길 탐방로 조성사업, 수질오염원 관리, 친환경운전장치 부착.
2016 (50건)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수질오염원 관리,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사유림 경영정보DB 구축, 「서울의제2」 실천, 서울 제사용 플라자 조성, 근교산 등산로 정비,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서울 제사용 플라자 조성(도사개방), 근교산 지락길 조성,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구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지원, 시립병원 에너지효율화사업, 생태놀이터 조성,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한강로 일대 방제시설 확충사업(유역분할), G밸리 전기자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전기이륜차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목재펠릿 보급 확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조립(토착수종식재), 서울둘레길 유자관리,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숲가꾸기 사업,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빛물림프정간 하수암거 정비, 산림서비스 증진, 서울그린페스티벌(환경영화제) 지원, 산림병해충 방제, 그린카 보급,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아차산 문화벨트),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하수역류(정화조) 저감 추진, 목재생산 기반조성,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산불방지 대책, 저녹스버너 보급,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표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133개 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이 1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15개, 10% 이상 5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59개, 50% 이상 10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43개, 100% 적용된 사업은 16개 사업이다.

<표3-24> 환경보호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보조율		세부사업명
10% 미만	2014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국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자원화수시설위탁운영(양천노원 강남마포),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2015	중량물재생센터수처리유지보수, 초미세먼지 감측기반 조성, 수질오염원 관리, 국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2016	서남물재생센터민간투자, 에코마일리지제운영, 수질오염원관리, 서울재사용플라자조성, 근교산등산로 정비, 초미세먼지감측기반 조성
10%이상 50%미만	2014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친환경운전장치 부착,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서울의제21」 실천, 수질오염원 관리사회복지시설 건물 에너지이용 효율화,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한강로 일대 방제시설 확충사업(유역분할), 토착수종 식재 및 도시숲 복원, 산림경영계획,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숲가꾸기 사업,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2015	근교산 등산로 정비, 근교산 자락길 조성,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서울의제21」 실천, 친환경운전장치 부착,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한강로 일대 방제시설 확충사업(유역분할),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2016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도시개발), 근교산 자락길 조성,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서울의제21」 실천,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구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지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양명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시립병원 에너지효율화사업, 생태놀이터 조성,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한강로 일대 방제시설 확충사업(유역분할), G밸리 전기차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숲가꾸기 사업,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조림(토착수종식재),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전기이륜차 보급,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50%이상 100%미만	2014	북한산 산사길 탐방로 조성사업,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산림병해충 방제, 그린카 보급,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산불방지 대책, 서울그린페스티벌(환경영화제)지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보조), 사유림 경영정보DB 구축, 저녹스버너 보급, 산림서비스 증진,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2015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북한산 산사길 탐방로 조성사업,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서울그린페스티벌(환경영화제) 지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사유림 경영정보DB 구축, 산림병해충 방제,저녹스버너 보급,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산불방지 대책, 산림서비스 증진, 그린카 보급,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2016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산림병해충 방제, 그린카 보급, 산림서비스 증진, 서울그린페스티벌(환경영화제) 지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사유림 경영정보DB 구축,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하수악취(정화조) 저감 추진,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목재펠릿 보급 확대, 저녹스버너 보급,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아차산 문화벨트),산불방지 대책.
100%	2014	목재생산 기반조성, 성북구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 지역에너지절약사업.
	2015	생태놀이터 조성,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아차산 문화벨트), 목재생산 기반조성,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구도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지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노후 하수관로 정비
	2016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목재생산 기반조성,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6)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는 <표3-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33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은 8,721,832백만원 지원 되었다.

이 중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사업은 2014년에 의료급사업,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어린이집지원 (보조), 보육돌봄서비스, 긴급복지지원사업, 용미리 제1묘지 산지 정비사업,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유지보수, 시립승화원 화장로 유지보수,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 서울시 화조대희망들 건립 및 운영,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수당,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사업 지원, 건전성 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등 17개 사업이고, 2015년에 의료급사업,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육아종합센터 운영, 어린이집지원 (보조), 보육돌봄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기능보강, 노숙인시설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 자연장지조성,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수당,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사업, 성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지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등 22개 사업이며, 2016년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의료급여사업,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어린이집 지원(보조), 보육돌봄 서비스, 영유아 보육료(보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지원,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이다.

그 외 사업은 대상사업명이 상이하거나 개별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들이다.

<표3-25>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사회복지	331	8,721,832	110	2,502,959	114	3,038,612	107	3,180,261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복지분야의 연도별 세부적인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은 <표3-26>과 같다.

<표3-26> 사회복지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년도	세부사업명
2014년 (110건)	가족폭악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자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지원, 주거급여개편 관련 시범사업, 정부양곡 할인 지원, 의료급여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2014년 지역사회복지 지협약체 지역대회,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공공주도형),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민간주도형),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동기강화), 보육정보센터 운영,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지원(보조), 어린이집 지원(보조),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 보육료(보조),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계 운영,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생후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 상담여성 자립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노숙인시설운영,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지원, 간접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입학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역공동체 알자리, 입학이동가족지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운영(장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어르신알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어르신 알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자정운영,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용마리 제1묘지 단지 정비사업,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유지보수, 시립송화원 화장로 유지보수, 용마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 발달장애인 생년후견 지원사업, 서울시 하조대 화장당 건립 및 운영, 장애인등록전단비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장애아가족 아동 양육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장애수당, 중증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저소득층 알자리 지원), 화랑기움통장, 자활장려금, 화랑리본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활근로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저출산대응만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가정양육수당 지원, 창안승인 도시주거재생사업,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마을기업 육성,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건전상가차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두드림존 운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미혼 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기능보강,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결핵 역학조사 관리사업,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가족역량강화지원, 주요감염병표본감시, 감염병 전문가 교육,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영유아 및 장애인환자 건강검진,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역학조사관 교육 및 활동비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운영, 한센병원자 관리지원, 결핵 관리.

2015 (114건)	도로본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생태마을 조성 지역행복생활권 신도시사업(아차산 문화벨트),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근교산 자락길 조성 근교산 등산로 정비, 목재생산 기반조성, 사유림 경영정보DB 구축, 산림서비스 증진, 북한산 산사리 탐방로 조성사업, 산불방지 대책, 숲가꾸기 사업, 토착수종 식재 및 도시숲 복원, 산림병해충 방제,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서울 제사용 플라자 조성, 구로지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지원,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수질오염원 관리,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재펠릿 보급 확대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옥내 노후배관 교체지원, 예코마일리지제 운영운영경유자 자공해 사업, 친환경운전장치 부착, 중량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가우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저독스퍼너 보급, 서울그린페스티벌(환경영화제) 지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그라나 충전인프라 구축, 그라나 보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유역분할), 전기아파트 보급,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빌드업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서울의제2」 실천
2016 (107건)	제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거리노숙인 보호,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공공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지원(보조),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베이비부머 보살일자리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계 운영,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자립아동센터 운영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장애인등록간담회 지원,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시립청소년직업재활센터 건립,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보육돌봄서비스,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장애수당, 노숙인시설운영,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아동발달지원체계 지원,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장애부모 아동의 양육지원 바우처사업,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장애인의료비 지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의료급여사업, 영유아 보육료(보조), 가정양육수당 지원, 희망기움통장 I·II,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마을기업 육성,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운영, 통합사례관리 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공동체 알자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내일기움통장,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창산승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정부양곡 할인 지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민간주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기초연금 지급,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표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331개 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이 1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36개, 10% 이상 5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135개, 50% 이상 10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144개, 100% 적용된 사업은 16개 사업이다.

<표3-27> 사회복지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보조율		세부사업명
10% 미만	2014	제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2015	제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공공복지전담체계개선,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016	제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거리노숙인 보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국 공립어린이집 확충,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10%이상 50%미만	2014	보육정보센터 운영, 어린이집 지원(보조), 공공복지전담체계개선(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서울시 하조대 화망들 건립 및 운영,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마을기업 육성,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계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성매매 피해 상담여성 자립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용마리 제묘지 단지 정비사업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사업,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장애인등록잔단비 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보육돌봄서비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장애수당, 노숙인시설운영, 입양아동가족지원, 영유아 보육료(보조),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아동발달지원체계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저출산 대응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어르신 일자리사업,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의료급여사업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015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어린이집 지원(보조),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장애인등록잔단비 지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계 운영,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마을기업 육성,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육돌봄서비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장애수당, 노숙인시설운영, 저 출산 극복 인식개선, 입양아동가족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아동발달지원체계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성매매 피해 상담여성 자립지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어린이집 기능보강(민간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10%이상 50%미만	2016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어린이집 지원(보조),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베이비부머 보살일자리 지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계 운영,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장애인등록전담비 지원,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보육돌봄서비스,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장애수당, 노숙인시설운영,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아동발달지원체계 지원, 아이돌봄사업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성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2014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유지보수, 시립승화원 화장로 유지보수,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희망리본사업,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두드림존 운영), 미혼 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장애인의료비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긴급복지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고용노동부), 창신승인 도시주거재생사업,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희망키움통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주거급여개편 관련 시범사업,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지원(보조),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 여성장애인 교육, 기초노령연금 지급,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50%이상 100%미만	2015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두드림존 운영), 미혼 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의료급여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보육료(보조),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희망리본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중증장애인연금,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 가족역량강화지원, 어르신일자리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고용노동부), 희망키움통장 I·II, 창신승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자활장려금, 자활근로사업 지원, 자연장지 조성, 기초연금 지급, 정부양곡 할인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2016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의료급여사업, 영유아 보육료(보조), 가정양육수당 지원, 희망키움통장 I·II,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마을기업 육성,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운영, 통합사례관리 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긴급복지지원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내일키움통장,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창신승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지급, 자활근로사업 지원,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여성장애인 교육,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100%	2014	2014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공공주도형),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민간주도형), 전담체계 개편 시범사업(동기능강화), 외국인주인 집중거주지 생활환경 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2015	201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전문직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메르스(MERS)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민간주도형), 전담체계 개편 시범사업(동기능강화),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공공주도형).
	201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민간주도형)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7) 보건분야

보건분야는 <표3-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11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은 61,978백만원이 지원 되었다.

이 중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사업은 2014년 및 2015년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이고, 2016년에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등 3개 사업이다.

그 외 사업은 대상사업명이 상이하거나 개별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들이다.

<표3-28> 보건분야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보건	114	61,978	36	13,923	46	31,286	32	16,769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건분야의 연도별 세부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은 <표3-29>과 같다.

<표3-29> 보건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년도	세부사업명
2014년 (36건)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강북 유통농수산물·한약재 안전성 검사, 축산물 이력제 실시, 축산물 수거검사,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컨설팅 사업,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학교 우유급식 지원, 축산물 안전성 검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시도가축방역·기능보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2015 (46건)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결핵 역학조사 관리사업,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주요감염병표본감시, 보건소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대책 지원, 메르스(MERS) 환자 진료비 지원,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감염병 전문가 교육, 기저귀 교체분유 지원,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결핵 관리, 역학조사관 교육 및 활동비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강남 유통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물 이력제 실시,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학교 우유급식 지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축산물 수거검사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컨설팅 사업,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시도가축방역,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설치 운영, 산별진료소 운영(판 지원·응급의료기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약업소 유통 지도관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 구급차 증차.
2016 (32건)	청사시설 유지관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물 수거검사, 시도가축방역,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업소 유통 지도관리, 저소득기저귀 교체분유 지원사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주요감염병표본감시, 건강기능식품 관리,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역학조사관 교육 및 활동비 지원,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컨설팅 사업, 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표3-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114개 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이 1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17개, 10% 이상 5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37개, 50% 이상 10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52개, 100% 적용된 사업은 8개 사업이다.

<표3-30> 보건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보조율		세부사업명
10% 미만	2014	축산물 안전성 검사,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강남 유통농수산물·한약재 안전성 검사,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2015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설치 운영, 정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강남 유통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2016	청사시설 유지관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10% 이상 50% 미만	2014	축산물 수거검사, 시도가축방역,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국내의 재난의료지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운영,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015	축산물 수거검사,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시도가축방역,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보건소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대책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016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축산물 수거검사, 시도가축방역,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업소 유통 지도관리, 저소득기저귀 교체분유 지원사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50%이상 100%미만	2014	주요감염병 표본감사사업, 결핵 역학조사 관리사업,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주요감염병표본감시, 축산물 이력제 실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환경분야 시험검사 제도관리 시스템 강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컨설팅 사업
	2015	주요감염병 표본감사사업, 결핵 역학조사 관리사업,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주요감염병표본감시, 축산물 이력제 실시, 메르스(MERS) 환자 진료비 지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환경분야 시험검사 제도관리 시스템 강화, 결핵 관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산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응급의료기관), 건강검진,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컨설팅 사업,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영유아 및 장애인 재활, 자살예방 사업, 사립대학 안전도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역학조사관 교육 및 활동비 지원
	2016	주요감염병 표본감사사업,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주요감염병표본감시, 건강기능식품 관리,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환경분야 시험검사 제도관리 시스템 강화,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컨설팅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자살예방 사업, 사립대학 안전도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역학조사관 교육 및 활동비 지원
100%	2014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2015	감염병 전문가 교육,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2016	감염병 전문가 교육,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8) 농림해양수산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표3-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8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은 41,674백만원이 지원 되었다.

이 중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사업은 2015년 및 2016년에 농업전문인력 육성 1개 사업이고, 그 외 사업은 대상사업명이 상이하거나 개별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들이다.

<표3-31> 농림해양수산분야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농림해양수산	88	41,674	25	33,260	29	5,961	34	2,453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연도별 세부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은 <표3-32>과 같다.

<표3-32> 농림해양수산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년도	세부사업명
2014년 (25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귀농 종합 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발효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농자이용관리지원, 과해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토양개량에 공급, 자치구 도시농업 활성화,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유기질비료 지원, 살처분 보상, 가축방역, 양곡관리, 농가경영컨설팅,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정보화지원,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업전문인력 육성, 선도농가경영 육성, 발효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농자이용관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과해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자양농업기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기술 전문교육
2015 (29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귀농 종합 지원, 전통 우리음식 및 생활문화 교육, 선도농가경영 육성,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유기농업자재 지원, 토양개량에 공급,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유기질비료 지원, 살처분 보상, 가축방역, 양곡관리, 농가경영컨설팅,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농업전문인력 육성,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농기계 훈련사업, 친환경농업 활성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농업기술 전문교육
2016 (34건)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농업전문인력 육성, 친환경농업 활성화, 귀농 종합 지원, 전통 우리음식 및 생활문화 교육,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농촌교육농장 육성, 농업농촌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기술 실증시험,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농기계 훈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유기농업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가축방역, 토양개량에 공급,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농산물 마케팅 지원, 양곡관리,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농작물 병해충 방제, 농가경영컨설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농업기술 전문교육, 선도농가경영 육성, 농자이용관리지원, 발효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표3-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88개 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이 1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15개, 10% 이상 5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8개, 50% 이상 10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38개, 100% 적용된 사업은 27개 사업이다.

<표3-33> 농림해양수산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보조율	세부사업명
10% 미만	2014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친환경농업 활성화, 자치구 도시농업활성화, 농업전문인력 육성, 귀농 종합 지원
	2015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업전문인력 육성, 귀농 종합 지원
	2016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농업전문인력 육성, 친환경농업 활성화, 귀농 종합 지원
10%이상 50%미만	2014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015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전통 우리음식 및 생활문화 교육,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016 전통 우리음식 및 생활문화 교육,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50%이상 100%미만	2014	농가경영컨설팅,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선도농가경영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가축방역,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2015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유기농업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농기계 훈련사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농업기술 전문교육, 선도농가경영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가경영컨설팅
	2016	농촌교육농장 육성, 농업농촌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기술 실증시험,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농작물 병해충 방제, 농가경영컨설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농업기술 전문교육, 선도농가경영 육성, 농기계 훈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유기농업자재 지원, 유기질비료지원, 가축방역, 토양개량제 공급
100%	2014	발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농지이용관리지원, 피해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살처분 보상, 양곡관리,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2015	발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농지이용관리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피해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살처분 보상, 양곡관리,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2016	농산물 마케팅 지원,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발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양곡관리,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지이용관리지원,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9) 산업중소기업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는 <표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1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은 74,018백만원이 지원 되었다.

이 중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사업은 2015년도 및 2016년도에 서울과학관건립 1개 사업이고, 그 외 사업은 대상사업명이 상이하거나 개별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들이다.

<표3-34> 산업중소기업분야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산업중소기업	17	74,018	5	17,607	7	39,322	5	17,089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연도별 세부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은 <표3-35>과 같다.

<표3-35> 산업중소기업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년도	세부사업명
2014 (5건)	G밸리(서울디지털 산업단지)활성화 추진, 서울 과학관 건립, 소비생활센터 운영,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2015 (7건)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서울 과학관 건립, 창조전문인력 양성, 서울형 R&D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소비생활센터 운영,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2016 (5건)	운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서울 과학관 건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소비생활센터 운영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표3-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17개 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이 1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1개, 10% 이상 5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7개, 50% 이상 10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9개 사업이다.

<표3-36> 산업중소기업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보조율	세부사업명
10% 미만	2014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2015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10%이상 50%미만	2014 소비생활센터 운영
	2015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서울형 R&D 지원, 창조전문인력 양성
	2016 운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50%이상 100%미만	2014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서울 과학관 건립
	2015 서울 과학관 건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소비생활센터 운영
	2016 서울 과학관 건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소비생활센터 운영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10) 수송 및 교통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는 <표3-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

지 최근 3년간 전체 5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은 605,143백만원이 지원 되었다. 이 중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사업은 2014년에 우이-신설 지하 경전철 건설, 태릉-구리IC간 도로 확장,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건설 등 3개 사업이고, 2015년에 우이-신설 지하 경전철 건설,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 개설, 태릉-구리간 도로 확장, 별내선 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하남선 5호선 광역철도 건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등 10개 사업이며, 2016년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신탄선 경전철 건설(민자),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이다.

그 외 사업은 대상사업명이 상이하거나 개별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들이다.

<표3-37> 수송 및 교통분야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수송 및 교통	56	605,146	16	171,035	19	233,880	21	200,231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송 및 교통분야의 연도별 세부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은 <표3-38>과 같다.

<표3-38> 수송 및 교통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년도	세부사업명
2014년 (16건)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정액), 갑일~초이간 광역도로 건설(정액),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공동조사,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방채상환(지하철건설부채), 도로조명 스마트디밍 정밀제어 시스템설치, 태릉~구리 IC간 도로확장, 도시철도9호선 2단계 건설 도시철도9호선 3단계 건설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저상버스 도입,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제3차 서울시 택시 총량제 수립 용역,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저상버스 도입.
2015 (19건)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신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태릉~구리간 도로확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공동조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역 공기질 개선사업,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택시 감차보상 지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지방채상환(지하철건설부채),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택시 감차보상 지원.
2016 (21건)	장애인콜택시 운영,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공동조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신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확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도시철도9호선 3단계 건설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역 공기질 개선사업,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하남선(5호선연장)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표3-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56개 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이 1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7개, 10% 이상 5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27개, 50% 이상 10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14개, 100% 적용된 사업은 8개 사업이다.

<표3-39> 수송 및 교통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보조율	세부사업명
10% 미만	2014 장애인콜택시 운영,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2016 장애인콜택시 운영,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공동조사.
10% 이상 50% 미만	2014 도로조명 스마트디밍 정밀제어 시스템 설치 저상버스 도입 지방채상환(지하철건설부채),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지방채상환(지하철건설부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지하철역 공기질 개선사업, 저상버스 도입,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2016 보행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50% 이상 100% 미만	2014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공동조사,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버스),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제3차 서울시 택시총량제 수립 용역.
	2015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공동조사,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택시 감차보상 지원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016 택시 감차보상 지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도시철도9호선 3단계 건설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역 공기질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00% (정액)	2014 태릉~구리 IC간 도로확장, 갑일~초이간 광역도로 건설, 지하철 공기질 개선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태릉~구리간 도로확장,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신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2015 신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하남선(5호선연장)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6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1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표3-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5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은 137,518백만원이 지원되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사업명과 상이하거나 개별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들이다.

<표3-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건수	국고 보조금
국토 및 지역개발	59	137,518	17	33,960	20	67,249	22	36,309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연도별 세부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은 <표3-41>과 같다.

<표3-4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

년도	세부사업명
2014년 (17건)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공원공익근무요원), 시유공원내 테마놀이터 재조성,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개설, 이문취수정비특진지구내 이면도로개설공사, 중화재정비특진지구 봉화산길 확장공사, 전농동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 개설, 꽃동산 조성 및 녹지 조성시설물 유지관리, 도림천변 신대방역앞 침수해소, 양재근린공원 빗물 저류조 설치, 중앙정부하천 유지보수, 신갈재정비특진지구내 이면도로 개설공사, 용산구 한강로 방제시설 확충, 산월 빗물저류배수 시설 설치,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확대,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빗환경 개선, 한글 마루지 조성사업,
2015 (20건)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용산구 한강로 방제시설 확충, 중화재정비특진지구 봉화산길 확장공사, 전농동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 개설, 상계재정비특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산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확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유아숲체험장 조성, 에코스쿨 조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빗환경 개선, 국가하천 유지보수,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2016 (22건)	에코스쿨 조성유아숲체험장 조성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중화재정비특진지구 봉화산로 확장공사,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용산구 한강로 방제시설 확충, 동북권창업센터 조성용산구 한강로 일대 방제시설 확충,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확대, 푸른수목원 확대조성2016 승강기 간헐사고 승객 구조훈련, 개발제한구역관리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녹색자금사업(복주시설 나눔숲 조성)국가하천 유지보수,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지적관리,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표3-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59개 지원사업 중 국고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이 1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4개, 10% 이상 5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16개, 50% 이상 100% 미만으로 적용된 사업은 12개, 100% 적용된 사업은 27개 사업이다.

<표3-4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보조율별 지원사업 현황

보조율		세부사업명
10% 미만	2014	시유공원내 테마놀이터 재조성, 꽃동산 조성 및 녹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 도립천변 신대방역앞 침수해소
	2015	에코스쿨 조성
	2016	에코스쿨 조성
10%이상 50%미만	2014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빗 환경 개선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확대
	2015	유아숲체험장 조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빗환경 개선,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신원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남산 예방자락 재생사업.
	2016	유아숲체험장 조성, 남산 예방자락 재생사업,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길 확장공사,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용산구 한강로 방제시설 확충
50%이상 100%미만	2014	한남미투시조양업 용산구 한강로 방제시설 확충 신원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공익활동근로지원)
	2015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확대, 용산구 한강로 방제시설 확충,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2016	동북권창업센터 조성, 용산구 한강로 일대 방제시설 확충,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확대, 푸른수목원 확대조성.
100%	2014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개설 이문위경재정비촉진지구내 이면도로 개설공사,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길 확장공사, 전동동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교도로 개설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이면도로 개설공사 국가하천 유지보수
	2015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길 확장공사, 전동동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교도로 개설,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국가하천 유지보수,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2016	2016 송강기 갑힘사고 승객 구조훈련,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2016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독색자금사업(복지시설 나눔금 조성)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지적관리

자료: 서울시 2014~2016 예산·결산 자료 참고, 연구자 정리

제 4 장 서울시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서울시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문제점

1) 기준보조율 미준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로 나누어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자치단체 보조사업 성격과 보조율 간 관계분석’에 의하면, 기준보조율 책정의 문제점으로 “국고보조사업 목적이나 사업의 파급효과 및 위임사무의 여부, 자치단체의 재정력 수준에 따른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형식적이고 재정적으로 보조율이 결정”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에 그 일부가 명시되어 있을 뿐, 다수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시마다 정부부처의 재량에 의해서 보조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3-6>에서와 같이 서울시의 경우 2014년 313건, 2015년 365건, 2016년 359건 등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 사업명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기준보조율도 준수되지 않은 지원사업의 수가 2014년 233건(74.4%), 2015년 304건(83.4%), 2016년 303건(84.4%)에 달하고, 사업명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과 일치하긴 하지만 기준보조율이 준수되지 않은 지원사업의 수가 2014년 61건, 2015년 51건, 2016년 45건에 이르며, 사업명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과 일치하고 기준보조율이 준수된 지원사업의 수는 고작 2014년 19건, 2015년 10건, 2016년 11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보육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서비스 등의 기준보조율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0%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20%에 불과하고, 이러한 차

등적 보조율을 적용하는 지원사업의 수가 28건에 이르는 등 서울시는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 적용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대응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2) 보조금 사업 및 교부금 변경

<표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국고보조금은 2014년에 예산편성 기준 국고보조 사업비가 5.8조원(국고보조금 2.8조원, 대응 지방비 3.0조원)에서 결산기준 6.3조원(국고보조금 3.0조원, 대응 지방비 3.3조원)으로 0.5조원이 늘어났고, 2015년에는 예산편성 기준 6.6조원(국고보조금 3.4조원, 대응 지방비 3.2조원)이었던 국고보조 사업비가 결산기준 7.0조원(국고보조금 3.7조원, 대응 지방비 3.3조원)으로 0.4조원 이 늘어났으며, 2016년에도 예산편성 기준 국고보조 사업비는 6.8조원(국고보조금 3.5조원, 대응 지방비 3.3조원)에서 결산기준 7.7조원(국고보조금 4.0조원, 대응 지방비 3.7조원)으로 0.9조원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주기가 불일치됨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신규 사업이나 신청한 보조금이 변경될 경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대응 지방비를 편성해야 하는 지방재정 운영의 경직화 현상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국고보조금이 변경 통보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의 변경이 발생된 지원사업들에 대해 간주처리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에 관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신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발생되고, 한편으로는 예산편성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침해당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3) 국고보조금의 세분화

<표3-9>에서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의 분야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12개 분야 1,037개의 세부사업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122개 사업에 비하여 과도하게 세분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사업 중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영육아 보육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지원될 때에는 ‘영육아보육법’과 관련하여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종사자 인건비, 민간유아 기본보조금, 입양아 무상보육료지원,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차등보육료 지원과 같은 국고보조금 사업 등으로 세분화되어 지원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1억 미만 소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전체 1,037건 중 236건으로 2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표3-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보조금법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 세분화되고, 그에 따라 보조금액도 소규모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다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슷한 유형의 보조사업을 무분별하게 신청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세분화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사회복지분야 대응 지방비 가중

<표3-8> 서울시의 분야별 국고보조금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아 지원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서 2014년에는 전체 지원사업 313건 중 110건(35.1%)이고, 국고보조금은 총 2.9조원 중 2.5조원(85.7%)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는 전체 지원사업 365건 중 114건(31.2%)이고, 국고보조금은 총 3.6조원 중 3.0조원(83.7%)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전체 지원사업 359건 중 107건(29.8%)이고, 국고보조금은 총 3.7조원 중 3.1조원(84.8%)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만0세~2세 영유아보육료, 만0~6세 가정양육수당, 장애인연금제정 등 지출규모가 매우 큰 6대 복지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지원사업의 수와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대응 지방비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응 지방비 부담이 크므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준보조율을 높여서 대응 지방비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등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차등보조율의 적용 기준인 재정자주도와 재정지출 지수의 타당성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고, 재정자주도는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해서 하락되는 인과적 특징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지표의 왜곡을 가져옴으로써 상대적으로 서울시만이 차등보조율을 적용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서울시의 경우 기초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분야 대응 지방비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한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제 2 절 서울시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개선방안

1) 불합리한 기준보조율 개선

서울시의 경우 <표3-6>에서와 같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 사업명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기준보조율도 준수되지 않은 지원사업의 수가 2014년 233건(74.4%), 2015년 304건(83.4%), 2016년 303건(84.4%)에 달하는 등 기준보조율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보육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서비스 등의 기준보조율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0%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20%에 불과하고, 이러한 차등적 보조율을 적용받는 지원사업의 수가 28건에 이르는 등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음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대응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서울시에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기준 보조율에 대하여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있어서도 목적이나 파급효과, 위임사무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수준을 고려하는 등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2) 보조금 사업 및 교부금 변경 지양

<표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국고보조금은 2014년에 0.5조원이 늘어났고, 2015년에는 0.4조원 이 늘어났으며, 2016년에도 0.9조원이 늘어나는 등 보조금 사업 및 교부금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신규 사업이나 신청한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대응 지방비 편성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경직화 현상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신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편성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침해당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최근 5년간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편성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상에 명문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고,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포괄적 보조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3) 세분화 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통폐합

<표3-9> 서울시의 분야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통하여 서울시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122개 사업에 비하여 12개 분야 1,037개의 세부사업으로 과도하게 세분화 되어 있고, 이 중 1억 미만

소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236건(22.7%)을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소액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의 성과 및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슷한 유형의 보조사업을 무분별하게 신청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세분화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서울시 농림해양수산분야의 경우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 운영비’ 사업과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 보조금’ 사업 등 명칭과 사업목적이 유사하고, 보조금도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업의 경우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고,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34개 세부사업에 관해서는 도시농업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친환경농업기술보급, 농수산물 유통 선진화, 수의공중보건강화, 유통거래 질서 확립 등 6개 단위사업으로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소액의 유사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단의 기능을 활용한 종합적 판단을 통하여 포괄적 성격의 통합사업으로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사회복지분야 대응 지방비 부담 개선

<표3-8> 서울시의 분야별 국고보조금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아 지원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서 서울시의 경우 추진중인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이 91.9%를 차지하고, 자체사업은 8.1%에 불과하며, 지출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과 이에 따른 대응 지방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적용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명백히 중앙정부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기준보조율의 상향조정과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

킬 필요성이 있고, 서울시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적용에 있어 이미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있어 차등보조율을 적용 받는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음으로써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어 진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고보조금제도는 지방교부금제도와 더불어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낮은 가운데서도 국고보조금제도를 통하여 복지향상,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수혜를 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 해소에 일정부분 공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정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중 상당수의 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문제점에 관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한 결과, 기준보조율 미준수, 대응 지방비 부담 과중, 차등보조율 적용상 형평성의 문제, 국고보조사업 과도하게 세분화,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이 폭발적으로 증가, 정치적 성격을 띤 국고보조금이 제공, 교부결정시기의 부적절성,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후 평가의 문제점, 국고보조금의 송금 지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화 문제, 국고보조금 신청제도의 문제점, 국고보조사업 심의위원회의 소극적 역할 등이 선행연구들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의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를 분석대상으로 분야별 국고보조금 교부현황 및 세부사업별 국고보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준보조율 미준수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목적이나 사업의 파급효과 및 위임사무의 여부, 자치단체의 재정력 수준에 따른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형식적이고 재정적으로 보조율이 결정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에 그 일부가 명시되어 있을 뿐, 다수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시마다 정부부처의 재량에 의해서 보조율이 결정되고 있다. 보조금사업 및 교부금 변경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주기가 불일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예

상치 못한 신규 사업이나 신청한 보조금이 변경될 경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대응 지방비를 편성해야 하는 지방재정 운영의 경직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의 변경이 발생된 지원사업들에 대해 간주처리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에 관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신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발생되고, 한편으로는 예산편성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침해당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국고보조금의 세분화화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12개 분야 1,037개의 세부사업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122개 사업에 비하여 과도하게 세분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보조금액도 소규모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대응 지방비 가운데 있어서는 지출규모가 매우 큰 6대 복지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지원사업의 수와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대응 지방비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등이 서울시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시 국고보조금의 운용상 개선방안으로 첫째, 불합리한 기준보조율에 있어서는 서울시에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기준보조율에 대하여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보조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있어서는 목적이나 파급효과, 위임사무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수준을 고려하는 등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보조금 사업 및 교부금 변경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편성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상에 명문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고,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포괄적 보조금제를 도입하여 통합집행을 통한 사업의 합목적성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세분화 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명칭과 사업목적이 유사하고 보조금도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업들의 경우 통폐합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분야 대응 지방비 부담에서는 명백히 중앙정부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분야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의 상향조정과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고, 서울시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적용에 있어 이미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있어 차등보조율을 적용 받는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음으로써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업은 정부시책의 구현을 위한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탁되어 추진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관한 개선실태 내지는 개선사항에 관한 실행효과 검증 등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병태.(2008).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소담.(2018).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충묵.(2009).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영웅.(2011).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용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대균.(2012).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유은주.(2014). “기초노령연금의 지역간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조재환.(2001).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최덕재.(2008).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최상락.(2005). “지방재정 운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현승석.(201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재정운영 영향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현하영.(2009). “국고보조금의 분권교부세 전환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황의윤.(2002). “국고보조금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방개발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동기.(2009).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서울: 법문사.
- 권오성,김성철,배인명,서성아.(2005). 국고보조금 및 매칭펀드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5-277.
- 금재덕.(2018).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차별 효과.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박병희.(2018). 지방분권 확대기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 방안. 2018년 지방재
정발전 세미나 발표 논문집.
- 서정섭,김성주.(2017).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와 개선
과제. 2017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 임상수.(2013). 국고보조금이 재정 효율성과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 로짓과
프로빗 모형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12(2), 1-16.
- 임상수,최향석.(2017). 세입구조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특징에 관한
연구 :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1(3),
221-244.
- 임성일.(2012).국고보조금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6-16
- 한상우.(2017).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재정형평화 효과 비교분석. 『지
방행정연구』, 31(1), 85-106.
- 한재명.(2018). 주요 복지사업 차등보조율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계분석.
2018년 지방재정발전 세미나 발표 논문집.
- 홍인기.(2013)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지방비부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국
회예산처).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2016). 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I).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운영평가단.(2014). 2014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I).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2017). 2017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2015).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I).

국회예산정책처.(2011).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2014). 자치단체 보조사업 성격과 보조율 간 관계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16).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처.(2018).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서울특별시의회.(2015). 국고보조금사업 실태조사 ; 서울시 주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연구원.(2016).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위기와 유형 분석.

서울연구원.(2016).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FY 2016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www.moef.go.k

서울특별시, 서울재정 포털. <http://openfinance.seoul.go.kr>.

행전안전부, 지방재정365. lofin.mois.go.kr

HANSUNG
UNIVERSITY

ABSTRAC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 in Operation of National Subsidy by Local Government

Hwang, Cha-Ho

Major in Futures Convergence Public Consulting

Dept. of Futures Convergrnce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The local government of Korea is in the reality of any other choice but to depend on the source of revenue like local allocation tax, local grants, national subsidy which are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metropolitan council due to the limit in operation of local finances by autonomous finances like local tax and revenue other than taxes.

The national subsidy, as one of depending finances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secure the finance for the basic local government, means the money gra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support all or part of the business expenses, entrusting the policy of government or encouraging business to local government or individual.

Differently with local allocation tax or local grants, the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the response local finance obligatorily pursuant to the law of management of subsidy. Thus, upon this national subsidy, there comes continuously the criticism that it damages the stiffness of local finance or the financial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Nevertheless, the reality is each of local government is trying to with their all effort to secure the national subsidy of more amount.

Like this, it is evident that the current national subsidy system is the system which is certainly necessary in respect of its pure function, giving the big help to the enhancement of hygiene and welfare of local residents as the local government pursues and executes the basic industries such as construction of roads or ports which is hard to be realized by the poor finance of local government in the title of the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many problems appear in respect of reverse function in the operation.

In relation with this matter, I did the research of texts about the problems in operation of the national subsidy which occurs because, in so many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the central government pays the national subsidy in one-sided decision without any agreement with local autonomous entities.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following points are being indicated in the prior studies; ①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observe the basic support rate, ② the central government excessively imposes the response local finance ③the issue of fairness appears in application of differentiated support rate, ④the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is fragmented too much, ⑤national subsidy for the social welfare field is explosively increasing, ⑥Often, the national subsidy of political nature is being granted, ⑦the issue of appropriateness is raised on the choice of the object of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and the period of decision of allocation, ⑧ there are problems of remittance delay of national subsidy and afterward valuation, ⑨the problems are raised in respect of hindering autonomy of local finance and management of national subsidy business, ⑩the problems related to application of national subsidy and the role of examination committee of national subsidy business.

In this thesis, I summarized the problems in operation of national subsidy indicated in the prior researches, and I utilized it as the grounds of analysis to determine the problems in operation of national subsidy of Seoul. And I examined the status of national subsidy and the status of operating national subsidy according detailed business granted to the analysis object of the statement of budget and settlement of Seoul for last 3 years from 2014 to 2016.

As the result, ① in the case of Seoul, it turned out as the business name in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does not coincide with as

defin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of subsidy and although the basic subsidy rate arrives at 233 cases(74.4%) in 2014, 304 cases (83.4%) in 2015, 303 cases(84.4%) in 2016 in the number of subsidy business not observed and the basic subsidy rate of child-care help service and general support service for infant-care arrive at 50% in a case of other local governments but it is only 20% in a case of Seoul and the number of subsidy business applied by this differentiated subsidy rate is 28 cases. Like this, it is examined as unfair problems are occurring in application of the basic subsidy rate,

② it is turned out as there appears the problem of bringing the phenomena of stiffening in operation of local finance because of new business unexpected due to a change of subsidy business and grants or the formation of response local finance according the change of applied subsidy and there is a problem the effective management is limited in the business of new national subsidy and the problem the authority of local council of having the right to examine the budget formation is infringed,

③ it is turned out as the subsidy business of Seoul is segmented too much with 1,037 businesses of 12 sections compared to 122 businesses defin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of subsidy and among this, the business supported by the small amount less than 100 million won occupies 236 cases(22.7%) and so there is the problem in the result of business supported by small amount and the procurement of practical effectiveness and there is the problem the fragmentation of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is accelerated as local governments apply the similar business recklessly to secure more many amount of national subsidy,

④As the response local finance is abruptly increasing by national subsidy in section of social welfare including 6-major-welfare business of big expenditure, there comes the problem the burden of finance of Seoul is aggravated and in support of national subsidy to social welfare section, in th state of already being discriminated, it turned out as the problem in the operation of national subsidy of Seoul that social welfare section is to be once again under the double discrimination applied by the differentiated support rate in support of national subsidy.

In this thesis, also, I presented the following measures for improvement in the base of the problems in operation of national subsidy revealed in the operation state of national subsidy according detailed business of Seoul for last 3 years.

① In the unfair basic subsidy rate, there is a necessity of systematic improvement such of setting and executing the concrete selection basis and method, considering the purpose or ripple effect, whether or not of delegating duty, financial degree of local government even in objective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which is decided by discretionary determination of central government, making central government to observe the basic subsidy rate defin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of subsidy,

②In respect of change of subsidy business and grants, I presented the measure to stipulate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of subsidy regarding the support business steadily formed through the general analysis of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In respect of small amount business, it needs to introduce comprehensive subsidy system along the section and the systematic improvement which can maximize the result of business,

③In a case of the fragmented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the title and the business purposes are similar and for the small amount business under 10 million won, it needs the comprehensive merge,

④ In respect of the burden of response local finance in section of social welfare, it needs to reduce through reexamination of the enhanced adjustment of basic subsidy rate and the basic of application of differentiated subsidy rate in regard with the support business which evidently belongs to the proper duties of central government and for the case of Seoul, it needs systematic improvement of double discrimination like the application of differentiated subsidy rate to social welfare section and the application of basic support rate of national subsidy.

A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n the support business of national subsidy, as it takes the form to be driven by being delegated to local autonomous entity by necess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realiza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the necessity of additional research is raised, such as the verification of the improvement state of indicated details or the effect of practice of improvement details indicated as the problems.